

**강서구립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(꿈꾸는어린이도서관, 푸른들청소년도서관)**

심 사 보 고 서

2021년 10월 13일
행정·재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: 2021년 9월 29일

나. 제안자: 강서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21년 9월 30일

라. 상정일자: 제28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

행정·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·의결(2021.10.13.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교육지원과장 김옥단)

제안이유

강서구립도서관 중 꿈꾸는어린이도서관과 푸른들청소년도서관의 민간 위탁 운영 기간이 각각 2021년 11월 25일,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가. 꿈꾸는어린이도서관

1) 위탁시설 개요

- 시설명: 강서구립 꿈꾸는어린이도서관
- 위치: 강서구 공항대로 615(염창동, 강서평생학습관)
- 면적: 855.4㎡(지상1층, 3~4층)
- 좌석수: 244석
- 개관일: 2008. 4. 17.
- 장서수: 62,888권(도서 59,167권 / 비도서 3,721점)
- 주요시설: 꿈동이/꿈돌이자료실, 멀티미디어실, 꿈뜨락북카페, 강의실 등
- 위탁업체: 케이씨대학교
- 인력현황: 6명

2) 위탁기간: 5년(2021. 11. 26. ~ 2026. 11. 25.)

3)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- 2022년 꿈꾸는어린이도서관 운영 예산: 656백만원(구비)
- 산출근거: 인건비 376백만원, 운영비 245백만원, 도서구입비 35백만원

나. 푸른들청소년도서관

1) 위탁시설 개요

- 시설명: 강서구립 푸른들청소년도서관
- 위치: 강서구 강서로45다길 71(화곡동)
- 면적: 707.85㎡(지하1층, 지상1~3층)
- 좌석수: 184석
- 개관일: 2008. 4. 11.
- 장서수: 59,344권(도서 57,835권 / 비도서 1,509점)

- 주요시설: 청소년치료실 어린이치료실 다목적실 멀티미디어 대문화 장애인코너 운영
- 위탁업체: 학교법인 백영학원
- 인력현황: 6명

2) 위탁기간: 5년(2022. 1. 1. ~ 2026. 12. 31.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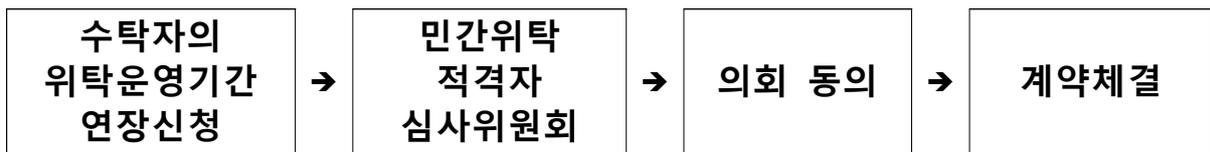
3)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- 2022년 푸른들청소년도서관 운영 예산: 478백만원(구비)
- 산출근거: 인건비 314백만원, 운영비 129백만원, 도서구입비 35백만원

다. 구립도서관 민간위탁 사무 내용

- 도서관 시설 관리 · 운영
- 도서의 열람 및 대출 관련업무, 도서자료 관리, 프로그램 운영 등 도서관 운영 전반

라. 수탁자 선정방식



※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7조제2항 및 부칙 제3조:
민간위탁 시행 이후 한번도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무의 경우 '19. 7. 17.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.

마. 위탁운영체 신청 자격: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공공기관

바.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

- 전문 인력(사서) 채용을 통한 운영의 효율성 극대화 가능
-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서 감시·감독으로의 입장 전환을 통해 시설 운영 기능 강화 기대

- 전문집단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험 및 기술의 축적으로 인한 기술 발전 가능성 제고 및 경쟁력 확보 기대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5조
-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, 제6조, 제7조, 제10조, 제16조, 제25조, 부칙 제3조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(전문위원: 최광호)

- 본 동의안은 구립도서관 2개소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대한 재계약을 추진¹⁾하기 위해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부칙 제3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,

1) ■ 강서구립 꿈꾸는어린이도서관 위탁 연혁

연번	위탁기간	수탁기관	비 고
1	2007.11.26. ~ 2010.11.25.	그리스도대학교	공개모집, 3년 위탁
2	2010.11.26. ~ 2013.11.25.	그리스도대학교	재계약 심의, 3년 위탁
3	2013.11.26. ~ 2016.11.25.	그리스도대학교	재계약 심의, 3년 위탁
4	2016.11.26. ~ 2021.11.25.	케이씨대학교	공개모집, 5년 위탁
5	2021.11.26. ~ 2026.11.25.	케이씨대학교	재계약 심의, 5년 위탁

■ 강서구립 푸른들청소년도서관 위탁 연혁

연번	위탁기간	수탁기관	비 고
1	2007.10.4. ~ 2010.12.31.	강서구시설관리공단	수의계약, 3년 위탁
2	2011.1.1. ~ 2013.12.31.	학교법인 세민학원	공개모집, 3년 위탁
3	2014.1.1. ~ 2016.12.31.	학교법인 세민학원	재계약 심의, 3년 위탁
4	2017.1.1. ~ 2021.12.31.	학교법인 백영학원	공개모집, 5년 위탁
5	2022.1.1. ~ 2026.12.31.	학교법인 백영학원	재계약 심의, 5년 위탁

- 꿈꾸는어린이도서관과 푸른들청소년도서관은 지역사회의 거점 도서관으로써 문화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사회 정보화 촉진 및 독서증진 활성화를 위해 2007년 건립 이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음.
-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16조에서는 재계약²⁾시 계약기간 만료 30일전까지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사 통하여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고,
-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25조에 따라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2개소 모두 ‘매우 우수’로 평가되어,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(2021. 9. 16.)를 거쳐 재계약을 진행하려는 것임.
- 구립도서관의 운영사무는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및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등의 기준에 따라 해당 분야에 대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기관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고,
- 위탁체 선정에 있어 기존 수탁단체와의 재계약이 적절하다고 결정됨에 따라 재계약을 통해 구민들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꾸준한 지도·감독 및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2)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4. "재위탁"이란 민간위탁하고 있는 사무를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다시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.
5. "재계약"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생략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※ 붙임 관계 법령 1부.

□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5조(운영의 위탁) ① 도서관의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. 다만, 구청장은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도서관의 관리·운영(이하 “운영”이라 한다)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·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(개정 2021.9.17.)

② 제1항의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(개정 2021.9.17.)

□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여성·청소년·아동·가족 복지를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
2. 노인·장애인 복지를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
3. 보건·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
4. 교통, 주차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
5. 문화·예술·영상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
6. 노동자복지, 자활, 취업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
7. 교육·교양·체육·공원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

8.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

제7조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사무는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③ 1년 단위 이하로 계약하는 연례 반복적 사무는 제1항과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한다.

제10조(수탁기관의 선정기준)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.

1.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·기구·장비·시설 및 기술 보유 정도
2. 재정 부담능력 및 책임능력, 공신력
3.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
4.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의 연관성
5.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

제16조(재계약 절차) ① 구청장은 재계약을 하려고 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최근 수탁기간 동안 구청장이 시행한 제22조의 지도, 점검, 감사에 따른 결과와 제25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등을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25조(종합성과평가)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
2. 1년 단위 이하로 계약하는 연례·반복적인 사무

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위탁사무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.

부칙 제3조(승인 및 동의 절차의 특례)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자치 사무의 경우 제7조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조례 공포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